

### 【 9 】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6. 8. 14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#### □ 제안이유

- 양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심사 절차중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규칙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 등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정례화하고,
- 민간인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 심사의 실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.

#### □ 주요골자

-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전환(안 제9조 제2호)
-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위하여 별도의 규칙을 제정(안 제13조)

양주군 조례 제 호

**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**

양주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(포상절차) 제2항중 “인사위원회”를 “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포상절차)①(생 약)</p> <p>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인사위원회의</u>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약)</p> <p>④ (생 약)</p> <p>제13조 (<u>신 설</u>)</p>	<p>제9조(포상절차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공적심사위원회의</u>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<u>시행규칙</u>)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